

힘이 되는 평생 친구, 보건복지부



질병관리본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」 개정 안내

1. 관련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

2. 「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」 (질병관리본부 고시 제1호, 2018.9.6.)을 아래와 같은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, 귀 학·협회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개정사항
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」 개정에 따라 고시 내 ‘정기에방접종’ 용어를 ‘필수에방접종’으로 변경
 - 일부 예방접종(B형간염, 결핵, 장티푸스,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)의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변경
 -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, 처리 등 동의사항 및 문구 수정
 - 시행일자: 2018년 9월 28일
 - 참고사항
 - 피접종자의 예방접종 내역 사전 확인에 미동의하여 불필요한 추가접종 또는 교차접종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접종 비용 및 이상반응 발생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이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자(피접종자,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)에게 책임이 있으니,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시 이를 안내하여 피접종자의 예방접종 내역을 사전에 확인 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도록 함
 - 예방접종 시행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자 수신 동의여부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함(9.28일부터 입력 가능)
 - *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피접종자,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는 전자서비스 오픈 예정

- 붙임 1. 「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」 개정안 1부.
 2. 「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」 개정 전문 1부. 끝.



질병관리본부장

수신자 대한소아감염학회, 대한감염학회, 대한소아과학회, 대한가정의학회, 대한내과학회, 대한산부인과학회, 대한이비인후과학회, 대한예방의학회, 대한백신학회,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,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, 대한아동병원협회, 대한개원의협의회, 대한가정의학과협회, 대한개원내과의사회,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, 대한산부인과협회, 직선제산부원과의사회,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

선임공무직	보건연구원	예방접종관리 과장	2018.9.17.
협조자			
시행	예방접종관리과-3063	접수	
우 28160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, 예방접종관리과 / http://cdc.go.kr		
전화번호	043-719-6827	팩스번호	043-719-6858 / rosaria22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